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028
----------	------

발의년월일: 2024년 08월 12일  
발의자: 최기찬, 강석주, 김성준,  
김영철, 김원태, 남창진,  
도문열,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유진, 박칠성,  
아이수루, 유만희, 유정희  
, 이소라,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정준호, 홍국표  
의원(21명)

## 1. 제안이유

- 최근 고령화사회가 가속화되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는 2022년 7월 ‘디지털 역량 강화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 2023. 4. 27.에는 국내 최초 ‘약자동행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배려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높은 파크골프장 이용에 있어 서울시 소재 12개의 파크골프장 이용방법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파크골프장은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사전 예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익월 사용을 위한 온라인 예약은, 통상 예약신청 개방 당일에 모두 예약이 완료되는 등 어르신들의 이용에 현실적 제약이 따르고 있음
- 이에 따라 스마트폰이나 PC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은 온라인 예약방식만으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이 타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임
- 이는 최근 가속화된 노령화 추세 및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서울시 정책 방향과도 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약자 배려정책을 서울시가 운영하는 체육 시설의 이용 및 예약방식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서울시 운영 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 노인을 포함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 전화 · 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방법의 다양화를 도모하도록 규정함

## 3. 참고사항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 전화 · 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 방법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④ (생 략)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 방법을 정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u>
<u>&lt;신 설&gt;</u>	<u>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전화·현장 예약방식 등 이용 방법의 다양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u>⑤ (생 략)</u>	<u>⑥ (현행 제5항과 같음)</u>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4조(체육 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제5항에 약자의 이용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sup>1)</sup>、전화、현장 예약방식<sup>2)</sup> 등 이용 방법의 다양화를 조치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당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김중현  
추계분석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인터넷 예약방식 도입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 또는 사설 예약사이트 위탁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재 서울시공공 서비스예약시스템(<https://yejak.seoul.go.kr/>)에서 각종 체육시설을 예약할 수 있으므로 향후 이를 활용할 경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2) 전화 및 현장예약 방식 도입으로 인한 추가소요 비용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